

# 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사유

사회복지사무소설치 등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사하 여성회관 직제가 폐지되었고,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이 개관되어 주민(여성)교육 확대 추진 및 예식장 등 시설대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5조제2항

## 3. 주요골자

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
조례안

#### 4. 검토의견

##### □ 본 폐지 조례안은

- 2004. 7. 1부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업무성격이 상이한 분야에 대하여는 통폐합하여 소관별, 기능별로 분류하여 추진함이 주민편익제고와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
  
- 또한 여성회관이 지난 2004. 6. 23부로 매각 완료 되어 교육부 소관 학교용지로 관리 전환된 상태고, 그동안 증축 중이던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이 완공되어 개관함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
  
-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##### □ 위 폐지 조례안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